

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

의안 번호	6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. 22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·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1. 1. 7~1. 9중 집중 폭설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폭설로 인하여 직접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주민세(균등할) 과세면제.
- 축사·잠사·비닐하우스시설에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재산세, 농업소득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.
- 농작물 및 인삼재배시설 피해자에게 농업소득세를 과세면제
- 사업장 피해를 입은 자에게 시설물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면제.

폭설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한 건

□ 과세면제에 관한 법적근거

○ 지방세법 제9조의2(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·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과세면제 대상 및 면제 세목

○ 2001. 1월 폭설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시세중 주민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·농업소득세·도시계획세·사업소세의 과세면제

면제세목	면제대상
2001년 균등할주민세	- 폭설로 인해 직접 물적 피해를 입은 자
2001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	- 축사·잠사·비닐하우스시설의 전파·반파 피해자 - 농가의 가축피해자 - 폭설피해 사업장
2001년 사업소세 (재산할)	- 폭설피해 사업장
2001년 농업소득세	- 농작물 및 인삼재배시설 피해자

□ 과세면제 세부내역

- ① 축사·잠사·비닐하우스 시설에 직접 물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주민세(균등할) 과세면제, 그 시설물이 전파·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·농업소득세·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하고 그 시설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
- ② 농작물 및 인삼재배시설의 폭설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주민세(균등할) 및 농업소득세를 과세면제 하고 인삼재배시설물 피해자에게 피해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
- ③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주민세(균등할) 및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
- ④ 수산물증양식·수산생물입식시설 등 기타사유시설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주민세(균등할) 과세면제
- ⑤ 사업장의 시설물, 원자재,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(균등할) 과세면제, 시설물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거나 훼손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·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하며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피해면적 만큼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면제.

소관 실·과·소		세 무 과
입 안 자	세 무 과 장	석 명 범 ☎ 940-4220
	시 세 담 당	이 용 석 ☎ 940-4238
	담 당 자	정 재 현 ☎ 940-4231

폭 설 피 해 현 황

☐ 인명 피해

(단위 : 명)

계	사 망	실 중	부 상	비 고
-				

☐ 건축물 피해

(단위 : 동)

계	유 실	진 파	반 파	비 고
-				

☐ 농작물 피해

(단위 : ha)

계	전	답	기 타
6.09			6.09

☐ 가축 피해

(단위 : 두, 수)

계	소	돼 지	기 타	비 고
31,391	15	25	31,351	

☐ 축사 피해

(단위 : 동)

계	축 사	비 고
413	413	

☐ 비닐하우스 피해

(단위 : ha)

계	비닐하우스	비 고
22.71	22.71	

☐ 수산시설 피해

(단위 : 식)

계	수산물 증양식	수산생물 임식
2	1	1

☐ 인삼재배시설 피해

(단위 : ha)

계	대규모	소규모
131.5	65.0	66.5

☐ 공장시설등 피해

(단위 : 개소)

계	공 장	광 산	비 고
51	51		

※ '2001. 1. 15. 현재

지방세 비과세 · 감면 추계액

□ 지방세비과세 · 감면 추계액 : 58,344천원

○ 도 세(비과세) : 31,839천원

(취득세 17,000 등록세 13,600 면허세 1,239)

○ 시 세(감 면) : 26,505천원

(주민세 6,063 재산세 6,100 종합토지세 2,534

도시계획세 340 농업소득세 8,565 사업소세 2,903)

□ 세입예산감소액 추계 : 26,505천원

○ 시 세 : 26,505천원

※ 과거 대비 지방세 비과세 · 감면현황

- '98년도 : 23,266건 332,145천원(호우피해)
- '99년도 : 22,692건 232,010천원(호우피해)
- '01년도 : 1,222건 58,344천원(폭설피해)

기타 세제지원실적

☐ 기한의 연장

- 기 간 : 1. 8 ~ 2. 6 사이 납기 ⇒ 2. 28일까지 연장
- 세 목 : 신고납부 세목
- 지 역 : 파주시전지역

☐ 징수유예 및 채납처분 유예

- 세 목 : 채납세 전세목
- 기 간 : 1. 8 ~ 2. 6 납기 ⇒ 6. 30까지 연장
- 대 상 : 납부통지서 및 독촉장을 교부 받은 자
- 지 역 : 파주시전지역